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 査 報 告 書

2005. 6. 22.
제239회 임시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05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5. 6. 14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
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총 무 과

- 바이오산업추진단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단내 전보권” 위임

○ 기업지원과

-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에 관한 사항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및 행정대집행

○ 관 광 과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다음의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 삭제
 -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 대한 조성사업 시행허가
 - 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
 - 관광지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및 금액의 결정
 -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 도지사 권한인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3. 검토보고 요지(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도 사업소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단내 전보권을 위임하고 있음.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음 관광과 소관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의 사무로 이양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현지성 사무 등을 시장·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임.
- 세부내용은
 - ①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 대한 조성사업 시행허가, ②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 ③관광지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및 금액의 결정, ④관광지 조성계획의 고시, ⑤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⑥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등 6건의 위임사무는 삭제하고,

- ①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②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등 2건의 위임사무는 신설되는 것임.
- 끝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에 관한 사항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및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이는 2004. 10. 22일 법률 제7240호로 “석유사업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면개정되고, 2005. 4. 23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 법령이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업의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기존 석유제품외에 석유대체연료, 즉 석유대체연료대리점, 석유대체연료주유소,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대상 사무가 포함되었음.
- 이에 따라 현재 시·군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석유제품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등록업무외에 “석유대체연료에 관한 주유소와 판매소 등록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시·군에 추가 위임토록 하려는 것이며 시행일은 2006. 1. 1일부터임.
- 이상과 같이 사무처리의 명확성과 적정성 등을 기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짐.
- 다만 기업지원과 소관 위임내용중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의와 종류, 그리고 일반 석유제품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현재의 석유판매업 등록 관리현황과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추가 신설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증가량은 어떻게 예측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삽입한다.

제2조제4항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삽입한다.

제5조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에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을 삽입한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15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 업 지 원 과	15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신고수리 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 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
	1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등록 및 변경등록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17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행정대집행	동법 제30조
	18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동법 제38조
	19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40조
	20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법 제49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관광과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관광과	1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희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관광진흥법 제6조
	2	○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동법 제50조제4항, 제52조제3항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련번호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실과	일련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기관	근 거 법 령
총무과	5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단내 전보권	바이오산업 추진단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16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조례개정 규정중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기업 지원과	1~14	<생략>		기업 지원과	1~14	<현행과 같음>	
	15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 판매소)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일반, 이동판매 소)신고수리	석유사업법 제9조 및 제11조		15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 수리 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수리 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제3항 동법 제14조
	16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동법 제13조 제3항		1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등록 및 변경등록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17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동법 제14조		17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및 행정대집행	동법 제30조
	18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동법 제28조		18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동법 제38조
	19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실시	동법 제30조		19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40조
	20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동법 제38조		20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법 제49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관광과	1	○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 대한 조성사업 시행허가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	관광과	1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희음 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 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편 선업) 지정 및 변경	관광진흥법 제6조
	2	○ 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	동법 제36조 제 3호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2	○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동법 제50조 제4항 및 제52조 제3항
	3	○ 관광지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및 금액의 결정	동법 제35조 제2항			<삭 제>	
	4	○ 관광지 조성계획의 고시	동법 제24조 제3항			<삭 제>	
	5	○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동법 제51조			<삭 제>	
	6	○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변경승인)신청	동법 제24조 제1항			<삭 제>	

【별표 4】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현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무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법령
총무과	1~4	<생략> <신설>			총무과	1~4	<현행과 같음>		
	5~9	<생략>				5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단내 전 보권	바이오산업 추진단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10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석유판매업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조건부 등록 등) ①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이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②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5. 제10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

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8. 제1항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제14조 (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33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 (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 내지 제3호·제10호 내지

제11호의 1에 각각 해당하는 때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 내지 제3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1에 각각 해당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 (보고 및 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 등·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개정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第3條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7. 관광편의시설업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등을 운영하는 업

② (생략)

제6조 (지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제50조 (관광지의 지정등) ① ~ ③ (생략)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조성계획의 수립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 (조성계획의 시행)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

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4조 (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65조 (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관광지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과도한 대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

제73조 (보고·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 지방공무원법 】

제6조 (임용권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생략)